

교직원주택 운영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(이하 “주택” 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주택”이라 함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<별표1>에서 명시한 건물로서, 총장, 외국인교수 및 교직원들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<개정 2017. 9. 28>
2. “입주자”라 함은 주택을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<개정 2017. 9. 28>
3. “외국인 교수”라 함은 교육·연구 목적으로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외국국적의 교원으로, 계약에 의해 주택을 제공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.<개정 2017. 9. 28>

제3조 (입주자격)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<개정 2017. 9. 28.>

1. 총장<개정 2017. 4. 26.>
2. 삭제<개정 2017. 4. 26.>
3. 외국인교수. 단, 사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며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.
4. 삭제 <2013. 9. 1.>
5. 기타 (대학운영상 불가피하게 거주가 필요한 자)<개정 2017. 9. 28>
6. 무주택자(입주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교직원)
<개정 2017. 9. 28>

제4조 (주택의 규모) 삭제<2017. 9. 28>

제4조의 2(입주자 신청 및 결정) 주택 입주희망자는 <별표2>와 같이 입주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며, 입주자 선정은 <별표3>의 선정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9. 28.]

제5조 (입주기간)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<개정 2017.9.28.>

1. 총장 : 재직기간으로 한다.
2. 삭제<2017. 4. 26.>
3. 외국인교수: 임용계약기간<개정 2017. 9. 28>
4. 무주택 교직원: 입주 계약기간 24개월<개정 2017. 9. 28>
5. 기타 입주자: 입주 계약기간 24개월<개정 2017. 9. 28>

제5조의 2(입주기간의 제한) 입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.

- ① 제5조의 재직기간 혹은 임용계약기간에 의거하지 않은 입주계약기간은 6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. 단, 신규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연장

할 수 있다.

② 무주택 교직원과 기타 입주자의 입주계약기간은 재직기간 이내로 한다. 단, ①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퇴직일을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의 입주계약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.

③ 퇴직 시 모든 입주계약은 즉각 자동 파기되며, 퇴직일 전까지 입주자는 퇴거한다.

[본조 신설 2017.9.28.]

제6조 (주택의 사용료) 주택의 사용료(월세, 전세, 보증금 등)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, 유상의 경우 해당 주택 시세의 50%로 산정한다.<개정 2017. 9.28.>

1. 총장: 무상
2. 삭제<2017. 4. 26>
3. 외국인 교수: 무상<개정 2017.9.28.>
4. 무주택 교직원: 유상<개정 2017.9.28.>
5. 기타 입주자: 유상

제7조 (관리의무 등) ① 제 3조와 같이 주택을 제공 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주택관리비 등 주택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거주목적 이외의 사용금지
 2. 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
 3.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의 금지
- 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 그 원상복구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주택내의 비품은 회계규정에 따라 관리의무가 있으며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- ④ 제공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비품목록에 의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 삭제<2017. 4. 26>

제9조 (주택의 관리 및 경비부담) ① 주택의 관리는 총무처 관리계에서 한다.

②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<별표4>를 따른다.<개정 2017. 9. 28>

제10조 (보칙)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지침의 개폐) 이 지침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개폐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지침의 개정 이전에 맺은 입주계약의 기간은 그대로 인정하되, 계약 잔여기간을 최소 12개월 보장한다.
- ③ (지침의 폐기) 이 지침은 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폐기한다.